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1084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2년도 4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05일

해양수산부장관

2022년도 4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해양수산부 R&D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초기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제도 개요

□ 추진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사목
- 기획재정부 훈령 제543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 해양수산부 훈령 제2022-663호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

2. 신청 자격 및 방법

□ 신청대상

○ (필수요건)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이 제품을 직접생산하거나 위탁생산한 경우 모두 신청 가능

②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17.12.5. 이후 종료) 이내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60점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

※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해양수산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신청대상 제품

○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22. 12. 5.(월) ~ '23. 1. 6.(금) 18:00 까지

○ (접수기간) '22. 12. 21.(수) ~ '23. 1. 6.(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 ②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http://tech.kimst.re.kr>) 전산 접수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구 분	나라장터 등록(조달업체/식별번호) 안내
등록방법	○ www.g2b.go.kr → 조달업체로 등록 → 로그인 → 물품식별번호 등록
등록 매뉴얼	○ (조달업체 등록 관련) 화면 우측 최상단 'e-고객센터' → 사용자설명서 → '나라장터 이용 및 등록가이드-조달업체' (115번 게시글) ○ (물품식별번호 관련) 화면 우측 최상단 'e-고객센터' → 사용자설명서 → '나라장터 이용 및 등록가이드-물품식별번호' (122번 게시글)
문의처	○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관련 문의 : (국번없이)1588-0800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 전산접수 방법 안내

http://tech.kimst.re.kr → 회원가입 → 로그인 → 혁신제품지정 신청접수(혁신제품→신청접수) → 내용입력 및 제출서류 등록 → 신청하기 클릭(접수완료)

* 문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평가팀 (02-3460-0393)

□ 신청서류

- (제출방법)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http://tech.kimst.re.kr>) 신청 시 자료 업로드

No	제출서류	서식	구분
①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의 혁신성 평가 신청서	별첨 1	필수
②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서	별첨 2	필수
③	해양수산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확인 증빙자료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아 사업화한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	필수
④	제품 규격서(자기점검표,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기관작성란 포함)	별첨 3	필수
⑤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 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별첨 4	필요시
⑥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 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평가를 위한 보완자료	-	필요시

□ 심사 수수료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평가 소요비용은 정부지원으로 전액 무료

3. 추진 및 평가절차

※ 혁신제품 관련 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지정 절차 등은 변동·조정될 수 있음

□ 제도 추진절차

주요내용	담당기관	세부내용
제품등록	신청기업	·신청대상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물품으로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 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		
신청	신청기업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에서 전산접수
↓		
제품 평가·심사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신청서류 검토 ·조달적합성 검토(조달청 별도진행) ·기술혁신성 평가(현장평가, 서류평가)
↓		
심의예정공고	해양수산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심의예정 공고
↓		
조달정책심의위 심의·의결	기획재정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혁신제품 지정여부 심의·의결
↓		
지정 및 인증서 발급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발급(해양수산부 → 신청기관) ·조달청에 지정정보 통보(해양수산부 → 조달청)

□ 평가절차

서류검토	조달적합성검토	현장평가	서류평가
KIMST	조달청	KIMST	KIMST

- ① (서류검토)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하고,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요청
- ② (조달적합성 검토) 신청기업의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여부 및 신청제품의 제조물품 등록 여부 확인

※ 조달적합성 검토 후 부적합 시 접수 반려

- ③ **(현장평가)** 신청제품의 제조현장에서 제품과 성능 확인, 연구개발 기술의 적용 여부, 제품생산을 위한 사업화 기반 등을 평가
- ④ **(서류평가)** 신청제품의 기술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통한 기술의 혁신성을 평가하며, 신청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설명 및 질의응답 진행
- **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제품을 기술의 혁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 * (종합평가점수) 개별 평가위원 점수의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
- ⑤ **(혁신제품 지정 심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또는 공공수요 발굴위원회, 소관부처 : 기재부·조달청)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 최종 심의·의결**

4. 평가기준

구분	평 가 기 준
현장 평가	1. 제품의 확인 ○ 신청자가 신청 제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 연구개발기술 적용 ○ 신청 제품에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요소기술의 적용 여부 3. 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 ○ 신청자가 제품 설명서에 기술한대로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4. 제품의 성능 확인 ○ 신청제품이 설명서에 기술된 내용과 같은 성능 및 기능을 할 수 있는지 확인 5. 기타 확인사항 ○ 신청제품 관련 증빙서류 보유현황 확인
서류 평가	1.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40) 가.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 (10) ○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 · 제품인지 여부 * 내외국인 생활편의 향상, 국민 생명·안전 보호, 기관 경영 효율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상승 등 나. 공공구매 필요성 (10) ○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 *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인지 여부 *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 제품에 해당하여 공공에서 초기 구매가 필요한지 여부 다. 현안의 시급성 (10) ○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여부 *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국민적 수요, 공론화 정도 * 해당 문제로 인한 기관의 경영상 손실과 시급성 정도 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10)

구분	평 가 기 준
	○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국민생활 향상, 사회 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기여도 * 사회적 리스크 감소와 경제적 효용 향상 기여도 2. 시장성(20) 가. 기대 시장규모 (10) ○ 기존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를 통한 시장 창출 가능성 및 규모 ○ 기존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를 통한 혁신으로 기존시장에서 새롭게 차지할 시장점유율 및 규모 나. 타 산업 파급성 (10) ○ 공공구매 확장성 *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국내/국외) ○ 적용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 관련 산업 및 시장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인지 * 국내 민간 유사분야 또는 타 분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3. 혁신성 (40) 가. 기술·제품의 신규성 (15)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 * 시장에 존재하는 경쟁기술 또는 유사한 관련 기술의 수 * 품질, 사용의 편의성, 가격프리미엄 등 나. 기술·제품의 탁월성 (15)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 기술이 적용되었는지 다.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10) ○ 기존 확보 보유기술의 완성도 ○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실현 가능성

5. 문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문의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	044-200-6222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평가팀)	신청·접수, 신청서 작성, 평가일정 등	02-3460-0393
조달청	조달업체 등록, 물품식별번호 발급 등	정부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

[별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 첨부서류